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

투표구명	인 구 수 (년 월 일 현재)	Ę.	선거인명부여 F재된 선거인	 수	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	세 대 수	비고
十五十名	(년 월 일 현재)	계	남	여	비 율(%)	게내꾸	H T

주: 1.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.

- 2. "인구수 ·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· 세대수"단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(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.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, (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(,)로 구분한다.
- 3.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
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

투표 구명	① 인구수 (년 월 일 현재)	② 선거인 명부에 등 재된 선거인수	③ 작권수정에 의한 감	이의·불 ⁴ 결정에 의 증	() 복신청등의 I한 감	⑤ 확정된 선거인 수	⑥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	⑦ 선상투표 신고인명 부등재자 수	인구에 대한 선거인 수비율 (%)	⑧ 세대수	비立
		계									
		白									

- 주 : 1.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 -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.
 -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(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)를 기재한다.
 -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·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.
 -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·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.
 -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・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.
 - 2. ①부터 ⑧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(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. 지방자 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(⑥⑦란 제외)하되, (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(,)로 구분한다.
 - 3.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 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 - 4.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<선거인명부수정상황>과 별지 제2호 <선거인명부확정내역>을 작성・첨부한다.

<별지 제1호>

선거인명부수정상황

투피구며	선거인명부	서 며	수정	내용	ムコリり	धो न	
十五十명	등재번호	성 병	수정전	수정후	←성사 ボ	미그스	
	·						

- 주 : 1.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·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, 오기, 누락, 이중등재, 사망,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.
 - 2.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"세대주"인 때에는 비고란에 "세"라고 기재한다.
 - 3.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"주민등록 재외국민" 또는 "외국인"이라 적는다.

<별지 제2호>

선거인명부확정내역

							_	<i>3</i> 1 1	0 11	'					
		①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·거주불명자 수					선거인	②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							
투표 구명	확정된 선거인수 (①+②+③		계	사전투표 소 또는 투표소 에서 투 표할 선 거인	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재외 투표소 에서 투 표할 선 거인		계	사전투표 소 또는 투표소에 서 투표 할 선거 인	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	재외 투표소 에서 투 표할 선 거인	③ 외국인 선거인 수	비고
		계						계							
		남						남							
		여						여							

주 :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.

①란은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,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, 거소·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,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(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)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
②란은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,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, 거소·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,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(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)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,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, 거소·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(법 제15조제1항제 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)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.

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.

(거소투표신고인명부) • (선상투표신고인명부)확정상황통보서

투표 구명	인 구 수 (년 월 일 현재)	(선거 (만	. 거 인 인명부작 료일 현	성기간 재)	확정된 • (선 [/]] (거소 상투표) 인수	신고	인구수에 대한 (거 소투표)·(선상투 표)	(거소투표)·(선상 투표)신고인수 비율	비고
	2 0 11	계	남	여	계	남	여	신고인수 비율(%)	(%)	

- 주: 1.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.
 - 2. "인구수·선거인수·확정된 (거소투표)·(선상투표)신고인수"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())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.
 - 3.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 - 4.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.